

대구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가단1247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전 문

원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피고대한민국

변론 종결2016. 6. 24.

판결 선고2016. 8.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10.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주장

가. 원고들은 자신들의 증조부인 H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사정받아 점유·경작한 이래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경작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전인 1995. 11. 1. 경부터 20년이 되는 2015. 10.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으로 임야대장과 토지대장(이하 임야대장 등이라고만 한다.)만이 있을 뿐이고 임야대장 등에는 I(J 또는 K라고 읽힘)가 1917. 10. 10.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 등은 개정된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것으로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임야대장 등에 의하여 소유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 청구는 토지대장 등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그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J 또는 K가 임야대장상 소유명의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위 J 또는 K나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여야 하므로 국가인 피고에게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없다.

덧붙이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 등은 위에서 언급한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종화

별지